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0. 김선민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9. 1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 의원)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 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교사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벌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자의 공익 신고를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내부 감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내부고발자 감면을 법률로 보장하여 자진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신고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신고자보다 더 큰 경우도 예외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